

한일 베라체 인비디아 입주자모집공고



※ 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견본주택 운영안내

- 한일 베라체 인비디아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hanilverace-invidia.com>) 및 사전방문예약제로 운영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실시하며, 관람 예약은 홈페이지(<http://www.hanilverace-invidia.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으로 제한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는 관람을 제한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입장 시 견본주택에서 실시·제공하는 검역·방역 절차 및 위생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분양계약 체결 목적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체온계 측정, 손소독제 사용 등)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일 베라체 인비디아 상담전화(☎1588-688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0.)**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2021.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공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공동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공동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ilverace-invidia.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관련 별표3)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급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협조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시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예시: 본 공동주택의 중도금대출은 무이자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개인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발코니 확장세대 기준으로 전용 88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사용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5월 02일 (월)	05월 03일 (화)	05월 10일 (화)	05월 23일 (월) ~ 05월 25일 (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40-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 25268호(2022.04.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외 8필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연립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13개동 총 168세대 중 일반공급 168세대
- 준공시기 : 2023년 12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 시 2024년 06월 예정)
- 입주시기 : 2024년 02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 시 2024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비분 (㎡)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2000234	01	88.5203A	88A	88.5203	23.3930	111.9133	58.4072	170.3205	170.9189	42	42
		02	88.5203B	88B	88.5203	23.3930	111.9133	58.4072	170.3205	170.9189	42	42
		03	88.5203C	88C	88.5203	23.3930	111.9133	58.4072	170.3205	170.9189	42	42
		04	96.0083	96	96.0083	25.4176	121.4259	63.3479	184.7738	185.3771	42	42
합 계											168	168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MDF실,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리플렛 등의 홍보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8.5203A	88.5203B	88.5203C	96.0083
약식표기 (타입)	88A	88B	88C	96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주택명	동	층	호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5%)	5차(15%)	
								계약시	2022.08.30	2022.11.30	2023.02.28	2023.05.30	2023.08.30	30%
88A	101	1	1,2	2	59,274,000	599,326,000	658,600,000	65,860,000	65,860,000	65,860,000	65,860,000	98,790,000	98,790,000	197,580,000
	102	1	1,2,3,4	4	59,274,000	599,326,000	658,600,000	65,860,000	65,860,000	65,860,000	65,860,000	98,790,000	98,790,000	197,580,000
	103	1	1,2	2	64,242,000	649,558,000	713,80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107,070,000	107,070,000	214,140,000
	104	1	1,2	2	64,242,000	649,558,000	713,80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107,070,000	107,070,000	214,140,000
	105	1	1,2	2	60,813,000	614,887,000	675,700,000	67,570,000	67,570,000	67,570,000	67,570,000	101,355,000	101,355,000	202,710,000
			3,4	2	63,387,000	640,913,000	704,300,000	70,430,000	70,430,000	70,430,000	105,645,000	105,645,000	211,290,000	
	106	1	1,2,3,4	4	59,868,000	605,332,000	665,200,000	66,520,000	66,520,000	66,520,000	66,520,000	99,780,000	99,780,000	199,560,000
	107	1	1,2,3,4	4	59,868,000	605,332,000	665,200,000	66,520,000	66,520,000	66,520,000	66,520,000	99,780,000	99,780,000	199,560,000
	108	1	1,2	2	60,480,000	611,520,000	672,0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100,800,000	100,800,000	201,600,000
	109	1	1,2	2	61,632,000	623,168,000	684,800,000	68,480,000	68,480,000	68,480,000	68,480,000	102,720,000	102,720,000	205,440,000
	110	1	1,2,3	3	60,480,000	611,520,000	672,0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100,800,000	100,800,000	201,600,000
			4	1	63,036,000	637,364,000	700,400,000	70,040,000	70,040,000	70,040,000	105,060,000	105,060,000	210,120,000	
	111	1	1,2,3	3	60,480,000	611,520,000	672,0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100,800,000	100,800,000	201,600,000
4			1	63,036,000	637,364,000	700,400,000	70,040,000	70,040,000	70,040,000	105,060,000	105,060,000	210,120,000		
112	1	1,2,3,4	4	60,480,000	611,520,000	672,0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100,800,000	100,800,000	201,600,000	
113	1	1,2,3,4	4	64,242,000	649,558,000	713,80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71,380,000	107,070,000	107,070,000	214,140,000	
96	101	2	1,2	2	60,795,000	614,705,000	675,50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101,325,000	101,325,000	202,650,000
	102	2	1,2,3,4	4	60,795,000	614,705,000	675,50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101,325,000	101,325,000	202,650,000
	103	2	1,2	2	64,872,000	655,928,000	720,80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108,120,000	108,120,000	216,240,000
	104	2	1,2	2	64,872,000	655,928,000	720,80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108,120,000	108,120,000	216,240,000
	105	2	1,2	2	61,407,000	620,893,000	682,30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102,345,000	102,345,000	204,690,000
			3,4	2	64,008,000	647,192,000	711,20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106,680,000	106,680,000	213,360,000	
	106	2	1,2,3,4	4	60,795,000	614,705,000	675,50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101,325,000	101,325,000	202,650,000
	107	2	1,2,3,4	4	60,795,000	614,705,000	675,50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67,550,000	101,325,000	101,325,000	202,650,000
	108	2	1,2	2	61,407,000	620,893,000	682,30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102,345,000	102,345,000	204,690,000
	109	2	1,2	2	62,235,000	629,265,000	691,500,000	69,150,000	69,150,000	69,150,000	69,150,000	103,725,000	103,725,000	207,450,000
	110	2	1,2,3	3	61,407,000	620,893,000	682,30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102,345,000	102,345,000	204,690,000
			4	1	64,008,000	647,192,000	711,20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106,680,000	106,680,000	213,360,000	
	111	2	1,2,3	3	61,407,000	620,893,000	682,30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102,345,000	102,345,000	204,690,000
4			1	64,008,000	647,192,000	711,20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106,680,000	106,680,000	213,360,000		
112	2	1,2,3,4	4	61,407,000	620,893,000	682,30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68,230,000	102,345,000	102,345,000	204,690,000	
113	2	1,2,3,4	4	64,872,000	655,928,000	720,80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72,080,000	108,120,000	108,120,000	216,240,000	
88B	101	3	1,2	2	55,143,000	557,557,000	612,70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91,905,000	91,905,000	183,810,000
	102	3	1,2,3,4	4	55,143,000	557,557,000	612,70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91,905,000	91,905,000	183,810,000
	103	3	1,2	2	58,842,000	594,958,000	653,80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98,070,000	98,070,000	196,140,000
	104	3	1,2	2	58,842,000	594,958,000	653,80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98,070,000	98,070,000	196,140,000
	105	3	1,2	2	55,701,000	563,199,000	618,90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92,835,000	92,835,000	185,670,000
			3,4	2	58,059,000	587,041,000	645,100,000	64,510,000	64,510,000	64,510,000	96,765,000	96,765,000	193,530,000	
	106	3	1,2,3,4	4	55,143,000	557,557,000	612,70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91,905,000	91,905,000	183,810,000
	107	3	1,2,3,4	4	55,143,000	557,557,000	612,70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61,270,000	91,905,000	91,905,000	183,810,000
	108	3	1,2	2	55,701,000	563,199,000	618,90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92,835,000	92,835,000	185,670,000
	109	3	1,2	2	56,448,000	570,752,000	627,200,000	62,720,000	62,720,000	62,720,000	62,720,000	94,080,000	94,080,000	188,160,000
	110	3	1,2,3	3	55,701,000	563,199,000	618,90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92,835,000	92,835,000	185,670,000
			4	1	58,059,000	587,041,000	645,100,000	64,510,000	64,510,000	64,510,000	96,765,000	96,765,000	193,530,000	
	111	3	1,2,3	3	55,701,000	563,199,000	618,90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92,835,000	92,835,000	185,670,000
4			1	58,059,000	587,041,000	645,100,000	64,510,000	64,510,000	64,510,000	96,765,000	96,765,000	193,530,000		
112	3	1,2,3,4	4	55,701,000	563,199,000	618,90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92,835,000	92,835,000	185,670,000	
113	3	1,2,3,4	4	58,842,000	594,958,000	653,80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98,070,000	98,070,000	196,140,000	

88C	101	4	1,2	2	70,893,000	716,807,000	787,700,000	78,770,000	78,770,000	78,770,000	78,770,000	118,155,000	118,155,000	236,310,000
	102	4	1,2,3,4	4	70,893,000	716,807,000	787,700,000	78,770,000	78,770,000	78,770,000	78,770,000	118,155,000	118,155,000	236,310,000
	103	4	1,2	2	75,645,000	764,855,000	840,500,000	84,050,000	84,050,000	84,050,000	84,050,000	126,075,000	126,075,000	252,150,000
	104	4	1,2	2	75,645,000	764,855,000	840,500,000	84,050,000	84,050,000	84,050,000	84,050,000	126,075,000	126,075,000	252,150,000
	105	4	1,2	2	71,613,000	724,087,000	795,70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119,355,000	119,355,000	238,710,000
			3,4	2	74,637,000	754,663,000	829,300,000	82,930,000	82,930,000	82,930,000	82,930,000	124,395,000	124,395,000	248,790,000
	106	4	1,2,3,4	4	70,893,000	716,807,000	787,700,000	78,770,000	78,770,000	78,770,000	78,770,000	118,155,000	118,155,000	236,310,000
	107	4	1,2,3,4	4	70,893,000	716,807,000	787,700,000	78,770,000	78,770,000	78,770,000	78,770,000	118,155,000	118,155,000	236,310,000
	108	4	1,2	2	71,613,000	724,087,000	795,70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119,355,000	119,355,000	238,710,000
	109	4	1,2	2	72,576,000	733,824,000	806,40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120,960,000	120,960,000	241,920,000
	110	4	1,2,3	3	71,613,000	724,087,000	795,70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119,355,000	119,355,000	238,710,000
			4	1	74,637,000	754,663,000	829,300,000	82,930,000	82,930,000	82,930,000	82,930,000	124,395,000	124,395,000	248,790,000
	111	4	1,2,3	3	71,613,000	724,087,000	795,70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119,355,000	119,355,000	238,710,000
4			1	74,637,000	754,663,000	829,300,000	82,930,000	82,930,000	82,930,000	82,930,000	124,395,000	124,395,000	248,790,000	
112	4	1,2,3,4	4	71,613,000	724,087,000	795,70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119,355,000	119,355,000	238,710,000	
113	4	1,2,3,4	4	75,645,000	764,855,000	840,500,000	84,050,000	84,050,000	84,050,000	84,050,000	126,075,000	126,075,000	252,150,000	

■ 공통 유의사항

- 분양가격 항목의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 전(세대 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라인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 주택전시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된 금액이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해당 공용면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공동주택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공동주택의 분양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해당금액이 미납될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하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중도금은 시행위탁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며, 이에 대해 강면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 세대별 또는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을 제외한 공동주택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면적 확정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해약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거나, 일시불로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상가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여,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점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계약자(매수자 혹은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자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 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등기업무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단위 : 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	300	250
전용면적 102㎡ 이하	300	600	400
전용면적 135㎡ 이하	400	1,000	700
모든 면적	500	1,500	1,000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지속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인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차액 충족 기준 : 청약신청 전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05.02(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05.03(화)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현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출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2.05.10.(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5.23.(월)~2022.05.25.(수)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본주택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40-4번지)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www.hanilverace-invidia.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奎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5.10.(화) ~ 2022.05.19.(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5.1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2022.05.16.(월) ~ 2022.05.18.(수) - 제출시간 : 10:00 ~ 16:00
제출처	- 견본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40-4번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안내(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 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공급 신청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세대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계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녀) 국내 거주 확인을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자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 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계약금 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인 계약불가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 공급계약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공급계약 기간 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공동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광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단지 111동과 112동 사이에 무연고묘 있음(사업면적에는 미포함), 모형태는 없으며 소유자가 불분명(이장불가)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축지역 3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404-261081	교보자산신탁(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901호 홍길동 → 09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우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시행위탁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본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중도금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융보증을 담보로 대출되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융보증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에 제한을 받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또한 당 공동주택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추후 타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에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태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 시 2024년 06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태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 시 2024년 08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행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등

■ 발코니 확장

- 본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해야하며, 확장 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무상 선택옵션

- 침실1,2 경계벽(경량벽체) 설치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설치 및 미설치 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유상 선택옵션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설치위치	계약금액			비고
			계약금(계약시) 10%	잔금(입주시) 90%	합계	
전 타입	비스포크 정수기	주방	118,000	1,062,000	1,18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수납장으로 설치 됩니다.
전 타입	비스포크 인덕션	주방	113,000	1,017,000	1,13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 되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타입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주방	143,000	1,287,000	1,43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수납장으로 설치 됩니다.
전 타입	비스포크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주방	517,000	4,653,000	5,17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전면에 도어가 설치되지 않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타입	에어드레서 및 벽판넬 시스템선반 [조명기구 타입변경]	드레스룸	442,000	3,978,000	4,42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일반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A,88B,96	시스템 에어컨 및 천정형 제습기	거실,안방,침실1,침실2, 드레스룸(제습기)	739,000	6,651,000	7,390,000	
88C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드레스룸(제습기)	891,000	8,019,000	8,910,000	
전 타입	거실 우물천정 간접 조명	거실	71,000	639,000	71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간접조명 없는 기본형 우물천정(단천정)으로 시공됩니다.

88A,88B,88C	거실 및 주방, 알파룸 포세린 타일	거실, 주방, 알파룸	206,000	1,854,000	2,06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로 설치되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6			218,000	1,962,000	2,180,000	
88A,88B,96	유리 벽체 및 슬라이딩 도어 [조명기구 1개소 추가]	알파룸	249,000	2,241,000	2,49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경량벽체와 가구도어로 설치되며 벽체 설치위치 및 조명등 사양이 변경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A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벽	334,000	3,006,000	3,340,000	* 유상옵션 미선택시 주방 벽은 기본형 도기질타일(600X300)이 시공되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B,88C,96			307,000	2,763,000	3,070,000	

■ 유상 추가선택 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국민은행	519701-01-321386	한일건설(주)

■ 추가선택 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 추가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 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사업주체가 옵션상품을 설치하는 시점 또는 계약자가 중도금을 납부하는 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추가선택 품목에는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크기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평형별 추가선택 품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단종, 품질, 품귀 또는 제조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급사양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추가선택 품목 설치를 기준으로 건립되었으므로, 기본형 선택시 변경되는 부분을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위치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음.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됨.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및 에어컨 개별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정상운전 시 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계약 시 입주예정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구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음.
- 빌트인 정수기 옵션 선택시 싱크대 하단에 본체가 설치되며, 호스 연결을 위해 싱크대 상판이 타공 되고, 하부장 측면에 타공이 추가될 수 있음.
-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옵션 미선택시 경량 벽체와 가구 도어로 설치되고, 알파룸 및 주방 아일랜드 식탁의 형태, 크기 등이 변경되며, 마감은 벽지로 시공됨.
- 드레스룸 벽판널형 시스템선반 옵션 미선택시 일반형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며, 후면은 벽지로 마감되고, 천정 조명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 됨.
- 본 공사시 주방 스위치 설치공간 확보로 냉장고장 측면두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벽체 마감 옵션 선택에 따라 싱크볼의 사양이 변경되며,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현관에 설치되는 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본 공사시 제조사 및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유리 사양, 제품형태, 하드웨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현관중문은 현관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사양이 주택형태마다 상이하며 중문 설치로 인해 신발장 형태,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및 아이소, 모델하우스 내 단지모형, 세대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식재,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관리형태지신탁 관련 사항

- ①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주)한경디앤씨”가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한경디앤씨”임을 “수분양자”는 인지한다.
- ②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은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한경디앤씨”가 부담한다.
- ③ “(주)한경디앤씨”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수분양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한경디앤씨(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다.
- ⑤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⑥ “교보자산신탁(주)”, “(주)한경디앤씨”, “한일건설회사(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태토지신탁계약에 의거 “한일건설회사(주)”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교보자산신탁(주)”가 본 사업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최대 6개월 자동 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그린 4등급	해당없음	2등급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비고
회사명	(주)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감리금액	₩638,793,550	₩33,000,000	₩55,000,000	₩77,0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서기간
제 01282022 - 101 - 0004600	82,397,42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임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충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중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임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에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임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단지 여건사항

- 각 주택형별 세대의 배치 및 층수 등에 따라 인접 건물 및 각종 시설로 인해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고, 각 주택형별 및 층수별 분양가 차등은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을 감안하여 적이 조정된 결과이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상 각 라인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방향 및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옥탑 및 축벽에는 조형물 및 공동시청 안테나, 피뢰침, 환기, 배수,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근린생활시설, 중앙광장, 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클린하우스(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자전거 보관대 등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석재,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 배기용 DRY AREA가 110동 4호세대, 107동과 108동 사이 어린이놀이터, 112동 1호세대 테라스 측면, 105동과 113동 사이 선큰 앞쪽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단지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라며 추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배수관,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시 신설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계획, 사인계획은 색채, 입면 자문결과 및 시행위탁자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하여 시공, 반영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을 설치하지 않는 타입은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단위세대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도로, 일조, 진입로 등), 주변 건축물 현황 및 개발계획, 조망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은 공동 사용하고 위치 지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향후 관리운영업체 선정 및 주차장 관리 여건에 따라 주차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바닥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및 배라체 BI, 단지사인, 시설물사인 등 각종 사인계획은 인허가, 법규의 변경, 현장 여건,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저층부 및 일부 타입(라인)은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저층부와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스푹)조명은 전시용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해 위치, 형태,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부대 복리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 차로폭은 6.9m(연석포함)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량등의 진입이 불가함.(추후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차로폭으로 인하여 차단기 설치유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 상부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형태, 크기, 디자인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클린하우스(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D.A가 설치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배출된 공기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입점으로 인해 소음, 냄새, 시간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음.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음.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적현황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단지배치, 주동위치, 도로선형, 조경(수목,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 면적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공동주택의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자 및 시행 수탁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시 일괄로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공사진행과정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주동 E/V홀에 세대 창고가 설치되며 세대별로 설치위치, 면적 등이 상이하니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차 충전설비(완속)는 지하1층에 24개소(예정) 설치되어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건물 내외부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입주자는 추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세대 내 거실 소파뒷벽과 복도 현관 아트월에 픽처레일이 설치 되며, 본 공사 시 몰딩보다 일부 돌출 될 수 있음.
- 대리석류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 할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외부 발코니의 실외기공간에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 4층 세대는 실외기실에 유사시 비상대피를 위한 완강기, 디딩판 등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실외기실 창호가 모델하우스 전시세대보다 가로폭이 10cm더 큰 (1200x2100)사이즈로 설치됨.
- 완강기를 이용한 비상대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 세대는 실외기실 창호 열림방향이 견본주택과 상이하니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 및 설치업체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주방에 설치되는 엔지니어드 스톤은 이음매가 발생하며, 본공사시 상판 이음매가 추가되거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욕실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입면에 주방 배기구, 전열교환기 급배기, 보일러 연도, 우수 및 급배수 관로 등이 설치되며 모델하우스 전시세대, 세대모형, 단지 모형, 분양용 C.G에는 표현하지 않음. 이에 소음 및 진동, 냄새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각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함.
- 세대별 계약면적과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로도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 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측과의 협의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LPG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탱크가 부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차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본 단지 공사여건, 지하주차장의 현장여건(지질상태, 지하구조, 주변 민원 등)에 따라 기초구조 및 공사공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색채계획, 석재, 테라코트 등 외부마감 줄눈계획, 테라스 옹벽 및 난간 등) 등의 형태, 사이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시설물, 계단, 장애인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시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구조관련 설계 및 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음.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또는 온천공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 및 1층 상부에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층 설계 계획상 지하주차장과 세대 E.V.출까지 연결복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세대는 이동 동선이 길어질 수 있으니 청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클린하우스 등의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Dry area의 위치 및 개소, 형태, 높이 등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1층 세대 2.4미터, 2~4층 세대는 2.3미터이며 천장고는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 및 시공오차 등에 의해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천장고에 따라 설치되는 창호, 가구 등의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천장고는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이 상이하고 전층 견본주택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되며, 다용도실 천장고는 층별, 세대별로 상이하니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강마루 선택시 복도 세면대 바닥은 타일과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니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88C 타입 거실등은 높은 천장고를 감안 거실등의 크기, 형태, 조도 등이 상이하니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에는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등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바닥에 사용되는 타일,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공사와 관계 없음.
- 외부창호(유리포함), 실외기실 그릴창은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고, 재질, 크기, 디자인, 색상,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와 외장재 등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 가전제품, 기전시스템, 창호류, 가구류(악세사리, 하드웨어 포함), 위생도기, 수정 등의 경우 본공사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세탁실 및 발코니 등에 결로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환기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람.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천연석, 무늬목 등의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 이색, 균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전기세대분전반, 통신세대단자함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시설변경, 단열계획으로 인한 일부 가구 등의 수치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기로 함.
- 무상제공 및 추가선택 가전제품 등의 A/S는 “을”이 제조사에 직접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요청 및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견본주택, 카다록, 분양 홈페이지 등에 사용 및 제시된 제품은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자재독점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수입품인 경우 양질의 대체제품이 있을 경우, 친환경 인증자재로의 대체 및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동등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기타 공유부분의 창호크기, 형태 및 일부 마감재, 공용부분의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상1층 옥외주차 3대는 근린생활시설용으로서 입주자 차량은 주차할 수 없음.
- 자전거보관대는 실제 공사시 설치위치, 디자인 및 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며, 단지 배치 특성상 층수 및 창문형태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유의 바람.

- 각종 창호류 (방화문 포함) 는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 또는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측벽/세대간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해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거실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 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제품모델,수량)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경량벽체의 적용으로 장식물 등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정물이 필요하며, 타공시 파손이 될 수 있음.
- 가스배관으로 인하여 주방가구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파티룸, 공유주방, 개인레슨실, 공용화장실 등으로 구성 예정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용도,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인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됨.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비고
시행위탁자	㈜한경디앤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19-57 와우시티B동 201호	284911-0253408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7~8층	110111-1617434	
시공사	한일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08 (도곡동, 매산빌딩)	110111-0016190	
감리자	㈜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813	110111-1204661	건축감리
감리자	㈜영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81, 5층	115911-0012569	전기/통신/소방감리

▣ 견본주택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40-4번지

▣ 사업주체 홈페이지 : <http://www.hanilverace-invidia.com>

▣ 분양문의 : 1588-688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